

제6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10. 11. 2.(화) 16:30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
3. 참석위원 : 최시중 위 원 장
이경자 부위원장
송도균 위 원
형태근 위 원
양문석 위 원 (5인)
4. 불참위원 : 없 음
5. 회의내용
 - 가. 성원보고
 - 나. 국민의례
 - 다. 개회선언
 - 라. 회의공개여부 결정
 - 마. 전차회의록 확인

바. 의결사항

1) 기간통신사업 허가에 관한 건 - (주)한국모바일인터넷의 와이브로 사업 - (2010-63-261)

- 노영규 통신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6조에 의거, (주)한국모바일인터넷(KMI)의 기간통신사업(와이브로) 허가 신청에 대해 원안대로 (주)한국모바일인터넷(KMI)을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의결함.
- 심사결과 주요 내용
 - ① 허가신청 적격 심사 : 적격
 - ② 사업계획서 심사 : 선정기준 미달
 - 허가신청법인이 허가대상 법인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, 심사항목별 60점 이상,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나, KMI는 총점 65.5점을 획득하여 허가대상 법인 선정기준에 미달

사. 보고사항

1)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세부심사기준(안) 등에 관한 사항

-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선정심사를 위해 마련된 '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세부심사기준(안)' 등을 김준상 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,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접수함. (이경자 부위원장, 안건보고에 참여 않고 퇴장)

※ 수정내용 : 4가지 "주요주주의 범위" 설정 방안 중 (제4안)을 수정하여 제시하기로 함

- '지분 5% 이상 보유 주주 및 지분 3% 이상 보유 주주 중 다량 보유자 순 합계 51%까지인 주주'를 '지분 5% 이상 보유 주주 및 지분 1% 이상 보유 주주 중 다량 보유자 순 합계 51%까지인 주주'로 수정
- 세부심사기준(안) 주요 내용
 - ① 기본 방향
 - ① 합법·합리적이고 공정·공명한 심사 진행
 - ② 정책목표를 고려한 심사기준 마련
 - ③ 심사기준의 객관성 제고
 - 전문가 토론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, 계량평가 비중을 강화
 - 계량평가 비중 : 종편PP 24.5%, 보도PP 20.0%

② 심사항목 배점 및 세부심사항목 구성·배점

① 방송의 공적책임·공정성·공익성의 실현가능성 (총편 250점, 보도 300점)

심사항목	세부심사항목	총편	보도
1-1. 공적책임·공정성·공익성 실현계획 (총편 70, 보도 90)	1-1-1.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방안의 적정성	30	30
	1-1-2. 방송의 공정성 확보방안의 적정성	20	35
	1-1-3. 방송프로그램의 공익성 확보방안의 적정성	20	25
1-2. 지역·사회·문화적 기여도 (총편 70, 보도 80)	1-2-1. 사회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	30	30
	1-2-2. 지역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	20	25
	1-2-3. 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	20	25
1-3. 신청법인의 적정성 (총편 60, 보도 70)	1-3-1. 신청법인 및 주주구성의 적정성	25	30
	1-3-2.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건전성	20	25
	1-3-3. 구성주주 중복참여(계량)	15	15
1-4. 시청자 권익 실현방안 (총편 50, 보도 60)	1-4-1. 소수 시청자 그룹 지원방안의 우수성	20	25
	1-4-2. 시청자 참여방안의 적정성	15	20
	1-4-3. 시청자 불만처리계획의 적정성	15	15

② 방송프로그램의 기획·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(총편 250점, 보도 200점)

심사항목	세부심사항목	총편	보도
2-1. 방송프로그램 기획·편성 계획 (총편 90, 보도 80)	2-1-1. 방송프로그램 기획·편성계획의 우수성	35	25
	2-1-2. 방송프로그램 기획·편성의 독창성	25	25
	2-1-3. 방송프로그램 편성의 자율성	30	30
2-2. 방송프로그램 수급계획 (총편 80, 보도 60)	2-2-1. 방송프로그램 자체제작 계획의 적절성	35	25
	2-2-2.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계획의 적절성	30	20
	2-2-3. 방송프로그램 구매 계획의 적절성	15	15
2-3.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력계획 (총편 80, 보도 60)	2-3-1. 방송프로그램 제작사와의 협력계획의 적정성	35	25
	2-3-2. 전략적 협력계획의 우수성	25	20
	2-3-3.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력계획의 방송산업 활성화 기여도	20	15

③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(종편 200점, 보도 250점)

심사항목	세부심사항목	종편	보도
3-1. 사업추진계획 (종편 30, 보도 40)	3-1-1. 시장전망 및 경영전략의 적정성	15	25
	3-1-2. 글로벌 미디어 기업으로서의 비전 및 전략의 우수성	15	15
3-2. 조직 및 인력운영계획 (종편 30, 보도 40)	3-2-1. 조직 및 인력구성의 적정성	15	20
	3-2-2. 인력확보 및 교육훈련계획의 적정성	15	20
3-3. 납입자본금 규모 (종편 60, 보도 60)	3-3-1. 최초 납입자본금 규모의 적정성(계량)	60	60
3-4. 자금 조달 및 운영계획 (종편 35, 보도 45)	3-4-1.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	20	25
	3-4-2. 자금운영 계획의 적정성	15	20
3-5. 사업성 분석 (종편 15, 보도 25)	3-5-1. 추정 재무제표 및 사업성 분석의 적정성	15	25
3-6. 경영의 투명성·효율성 (종편 30, 보도 40)	3-6-1. 경영의 투명성 확보방안	15	20
	3-6-2. 경영의 효율성 확보방안	15	20

④ 재정 및 기술적 능력 (종편 200점, 보도 150점)

심사항목	세부심사항목	종편	보도
4-1. 재정적 능력 (종편 90, 보도 60)	4-1-1. 자기자본 순이익률(계량)	30	20
	4-1-2. 부채비율(계량)	30	20
	4-1-3. 총자산 증가율(계량)	30	20
4-2. 자금출자 능력 (종편 60, 보도 45)	4-2-1. (현금 및 현금등가물과 단기금융상품 합계) 對 투자(출자)금액의 적정성(계량)	15	10
	4-2-2. 자기자본 對 투자(출자)금액의 적정성(계량)	15	10
	4-2-3.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신용등급(계량)	30	25
4-3. 기술적 능력 (종편 50, 보도 45)	4-3-1. 방송시설 설치·운영계획	30	25
	4-3-2. 방송기술 확보 및 활용계획	20	20

⑤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(종편·보도 100점)

심사항목	세부심사항목	종편	보도
5-1. 방송발전 기여계획 (종편 40, 보도 40)	5-1-1. 방송산업 발전 기여계획의 우수성	25	25
	5-1-2.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계획의 우수성	15	15
5-2. 콘텐츠산업 육성지원계획 (종편 40, 보도 40)	5-2-1. 콘텐츠산업 육성계획의 우수성	20	20
	5-2-2. 콘텐츠산업 기여계획의 우수성	20	20
5-3. 출연금 (종편 20, 보도 20)	5-3-1. 정부에 대한 출연금 규모의 적정성(계량)	20	20

③ 승인 최저점수 적용 대상 심사항목

- ① 공적책임·공정성·공익성 실현계획(공익성 관련)
- ② 신청법인의 적정성(공익성 관련)
- ③ 조직 및 인력운영계획(글로벌 경쟁력 관련)
- ④ 납입 자본금 규모(사업의 기반이 되는 재무적 역량 관련)
- ⑤ 콘텐츠 산업 육성·지원계획(콘텐츠 시장 활성화 관련)

④ 평가방법 관련 주요 사항

① 주요주주의 범위 : (제4안)을 수정하여 제시하기로 함

- 구성주주 중 평가의 주된 대상이 되고, 재무제표 등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주요주주의 범위를

‘지분 5% 이상 보유 주주 및 지분 1% 이상 보유 주주 중 다량 보유자 순 합계 51%까지인 주주’로 설정

② 주주구성 변경금지 방안

- (승인 신청 후 승인 의결 전) 주주구성의 변경을 허용하지 아니함
- (승인 의결 후 승인장 교부 전) 승인장 교부 시 주요주주 구성(지분을 포함)이 승인 의결 시와 다를 경우 원칙적으로 승인을 취소, 기타 주주의 변경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허용 여부 결정
 - ※ 상속, 법원판결 등으로 주요주주의 구성이 변경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인정
- (승인장 교부 후 일정 기간) 승인장 교부 후 3년 동안 주요주주의 지분 매각 등 처분을 금지하는 승인조건을 부여하고, 승인조건 위반 시 방송법령에 따라 처리
 - ※ 신청법인은 신청서류 제출 시 위 내용이 포함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

③ 5% 이상 주주의 중복참여 배제방안

- **(심사 시 평가방안)** '재정적 능력' 및 '자금출자능력'의 세부심사항목에서 중복참여 주주에 최저점수 부여, '구성주주 중복참여'(세부심사항목)에서 신청법인 감점처리*, 비계량 세부심사항목에서 중복참여 주주를 평가대상에서 제외
 - ※ 중복참여 주주의 지분율만큼 '구성주주 중복참여'(세부심사항목) 배점에서 감점처리
- **(승인 의결 후 처리방안)** 신청법인이 주주 중복참여로 인해 심사 시 불이익을 받고도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, 중복참여 주주를 대체한 주주가 주금납입을 완료한 후 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승인장을 교부

④ 5% 미만 중복참여 주주 평가방법

- 중복참여 주주의 지분율만큼 '구성주주 중복참여'(세부심사항목) 배점에서 감점처리
 - ※ 상법상 이사에 대해 유지(留止)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, 주주 대표소송이 가능한 기준인 지분 1% 이상 주주를 대상으로 함

⑤ 최초 납입자본금의 인정 범위

- **(설립예정법인)** 승인장 교부 직전까지의 출자예정금액으로 자본금(법정 자본금)과 자본잉여금(주식발행초과금)을 합한 금액
- **(기존법인)** 승인장 교부 직전까지의 유상증자 예정금액(주식발행초과금을 포함) 및 신청공고일 직전 최근일의 실질자본금*을 합한 금액
 - ※ 실질자본금이란 방송법 제9조의2(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요건)에 따른 해당 방송채널 사용사업만을 위한 자본을 의미

⑥ 최초 납입자본금 실현가능성 및 건전성 평가방안

- **(실현가능성 평가방법)** 자본금 납입 담보를 위해 모든 구성주주(기존법인의 경우 유상증자 참여주주)의 주금 납입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(주요주주의 경우 이사회 결의서 추가), 주요주주의 자금출자능력 등을 비계량으로 평가
 - ※ 주금 납입 관련 계약서 및 이사회 결의서의 세부사항을 고려하여 자본금 납입 실현가능성의 지속력을 평가
- **(건전성 평가방법)** 최대주주가 다른 구성주주와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신청법인의 재무적 건전성을 해칠 가능성에 대해 비계량으로 평가
 - ※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 등을 체결하고도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, 방송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허위·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여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

⑦ 주요주주가 법인격이 없는 단체인 경우 평가방안

- 법인격이 없는 조합 또는 펀드 등의 경우 심사 시 해당 단체의 출자자를 평가하고, 구성주주의 특수관계자 판단 시에도 출자자를 구성주주로 간주

·비법인 사단 또는 비법인 재단의 경우 단체성이 강하므로 단체 자체를 평가

○ 승인신청요령(안) 주요 내용

① 승인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요령

② 승인 신청서류 작성 세부지침

○ 향후 일정

- 전문가 토론회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(11월 초)
- 「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세부심사기준 및 승인 신청요령」 의결 (11월 중)
- 신청 공고 및 신청 요령 설명회 (「승인 세부심사기준 등」 의결 직후)
- 신청서류 접수 (신청 공고일로부터 3주 이내)
- 「승인 심사계획」 의결 (11월 ~ 12월 중)
- 심사위원회 운영 종료 (12월 중) 직후 선정 결과 의결

※ 향후 일정은 위원회 내부 사정 및 정책 추진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아. 기타

1)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

-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2010. 11. 8(월), 오후 3시에 개최하기로 함.

6. 폐 회 (18:15)